

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6. 21(월)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6. 4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6. 4

라. 상정일자 : 2010. 6. 16(제18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)

- 제안설명 : 보건사회국장 이부현
- 검토보고 :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제명 등 정비

나. 주요내용

-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.
(안 제1조, 제7조, 제8조)
-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함.
(안 제4조, 제5조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제명 등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6월 4일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주요 검토 내용

제명 및 조문 정비

- 본 개정안의 제명, 제1조(목적), 제2조(기금의 운용·관리), 제3조(기금의 회계관리), 제6조(위원회의 기능), 제7조(용자사업), 제8조(용자대상)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- 제3조(기금의 회계관리)와 제4조(회계공무원)에서는, 사무 처리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.

- 주요 개정 내역(요약)

현 행	개 정 안	비고
기금출납명령관	기금운용관	
식품위생담당국장	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	
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	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	

제7조(용자사업)

- 제7조에서는 조명을 “용자사업 등”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, 기존 용자사업과 더불어 식품위생법

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및 관련 제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임.

아울러 제3항을 신설하여 용자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제8조(용자대상)

- 개정안에서 용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는 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나,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★ 수정안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<u>시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</u> <u>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(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)</u> <u>영업허가(신고)를 받은 자로</u> 한다.	제8조(용자대상) ----- ----- <u>법 시행령 제21</u> <u>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8조(용자대상) ----- ----- <u>법 제36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부 칙

- 부칙 제2조에서는 “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”라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본 개정안은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·사용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과조치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<참고자료>

식품진흥기금 개요

1. 기금 조성

- 과징금 수입, 용자금 상환금, 이자 수입, 잡수입(집행잔액 등)

2. 기금 운용

● 사업분야

-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
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육성지원 사업
-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식품사고 예방·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

● 전년도 대비 운용계획

(단위 : 원)

사 업 내 역	'09 운용계획	'10 운용계획	비고
계	2,717,934,000	2,235,686,000	△482,248,000
고유목적사업비	1,965,275,000	1,735,686,000	
용 자 금	500,000,000	500,000,000	
물 건 비	252,659,000	-	

4. 용자 사업

● 용자한도 및 상환방법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조건	용자한도	이자(%)	상환방법
식품접객업시설개선자금	은행 여신 규정 준수	50,000	2%	1년 거치 3년 분할상환
화장실 개선자금		10,000	1%	3년 분할상환
모범음식점 육성자금		20,000	2%	3년 분할상환
식품제조·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		50,000	2%	1년 거치 3년 분할상환
HACCP시설개선자금		300,000	2%	1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5. 2010년 기금 운용 현황

● 총 보유액

(2010.4월말 현재/단위:천원)

총 보유액 (A)+(E)	예탁액			용자금	
	계 (A)=(B+C)	통합기금(B)	보통예금(C)	대출액(D) (2000년~현재)	상환잔액(E)
7,560,246	7,026,407	6,729,764	296,643	2,748,200	533,839

● 2010년도 수입현황

(2010.4월말 현재/단위:원)

구분	2010년도 누계	10. 4월분	비고
계	676,417,366	114,077,931	
국고보조금	0	0	
용자회수금(원금)	90,702,000	24,223,000	
이자수입	용자회수	3,067,411	814,931
	공공예금	-	-
	예탁이자	-	-
잡수입(집행잔액 등)	113,447,955	0	
과징금 수납액	469,200,000	89,040,000	

● 2010년도 지출현황

(2010.4월말 현재/단위:원)

예산액	지출액		비고
	누계	4월분	
2,235,686,000	887,854,000	50,000,000	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

나. 반대 : 김용근, 이명숙, 오흥철, 이병화, 정종섭 위원

6. 수정안 요지

- 안 제8조 중 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”를 “법 제36조에 따라”로 한다.
- 안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”를 “법 제3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,”를 “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기금”을 “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금출납명령관은 식품위생담당국장”을 “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“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”을 “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”를 “사무를

처리할”로 하며, “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”을 “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용자사업)”을 “(용자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”을 “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용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 중 “시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”을 “법 제3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식품위생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,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<u>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기금</u>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<u>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 <p>제4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 ② <u>기금출납명령관</u>은 식품위생담당 국장이 되고, <u>기금출납원</u>은 식품위생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	<p><u>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u>식품위생법</u> 제 89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</u>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 ----- ---<u>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 ----- ----- 「<u>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 -----.</p> <p>제4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기금운용관</u>은 식품진흥기금담당 국장 ----- <u>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금운용·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~③ (생략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 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 ⑤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운용·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. ④ -----사무를 처리할 -- -----식품 진흥기금담당사무관-----.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용자사업) ① 시장은 법 제71조 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2의4호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용자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7조(용자사업 등) ① --- 식품위생법(이라 “법”이라 한다) 제89조 제3항제1호에 따라 ----- -----.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용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p>제8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시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(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) 영업허가(신고)를 받은 자로 한다.</p>	<p>제8조(용자대상) ----- -----법 제36조에 따라 --- ----- -----.</p>

